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 관련 협조 요청

1. 환경부 물환경정책과-5575(2019.11.2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지자체별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가축사육시설인 배출시설 이외에 처리시설 (퇴비사 등)까지 조례로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에서 정하는 가축사육의 제한은 가축분뇨의 발생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배출시설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이미 발생한 가축분뇨를 정화 또는 자원화하는 시설이므로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따라서, 우리부에서 기 송부한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15.3.31.)」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가축분뇨법 유권해석 결과(`17.6.8.)」 등을 감안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제한하는 지자체에서는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개선 및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과장), 부산광역시(맑은물정책과장), 인천광역시(수질환경과장), 대전광역시(생태하천과장), 광주광역시(물순환정책과장), 대구광역시(수질개선과장), 울산광역시(환경보전과), 경기도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강원도지사(수질보전과장), 충청북도지사(수자원관리과장), 충청남도지사(물관리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물환경관리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물환경과장), 경상북도지사(맑은물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수질관리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김찬영 수의사무관 이주원 과장 전결 2020. 1. 10. 정희규

협조자

시행 물환경정책과-169 (2020. 1. 10.) 접수

우 0650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 / http://www.me.go.kr

전화번호 044-201-7009 팩스번호 044-201-7000 / now0002@me.go.kr / 대국민 공개